

○ 도로명주소 폐지

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자	폐지 사유	비고
관악구 승방3가길 42	2021년 11월 2일	건축물대장말소	남현동
관악구 남부순환로159길 6	2021년 11월 3일	건축물대장말소	신사동
관악구 신사로16길 6	2021년 11월 3일	건축물대장말소	신사동
관악구 서림3길 48	2021년 11월 8일	건축물대장말소	서림동
관악구 관악로14길 74-12	2021년 11월 8일	건축물대장말소	낙성대동
관악구 청룡5길 15	2021년 11월 8일	철거후신축	청룡동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지적과 지가조사팀(☎02-879-6635)에 문의 또는 관악구청 홈페이지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됩니다.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으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효력이 발생하여 법정주소로 사용됩니다.
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
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1-165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관악구 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 해제고시

서울특별시 관악구 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관악구 주요 공원 내 전역에서 22시 이후 음주를 금지하는

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해제합니다.

2021년 11월 11일

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

□ 해제 고시명

○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1-93호 : 코로나-19 확산 방지를 위한 관악구 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

부 칙

이 고시는 2021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1-166호 봉천1-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사업대행자 지정 고시

서울시 관악구 봉천1-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8조에 따라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11월 11일

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○ 사업종류 : 재건축정비사업

- 사업명칭 : 봉천1-1구역 재건축정비사업
- 2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법인명 : 봉천1-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조합
 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관악구 당곡길 74, 3층(봉천동)
- 3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 - 위 치 :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728-57번지 일대
 - 면 적 : 34,142.00m²
- 4.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 - 착공예정일 : 2025년 06월
 - 준공예정일 : 2028년 03월
 - ※ 상기 일정은 공사기간 및 인허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5. 사업대행개시결정을 한 날
 - 사업대행자 지정 고시일
- 6. 사업대행자
 - 법인명 :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
 -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7 (역삼동)
- 7. 대행사항

- 1) 사업비 조달 및 자금관리 대리사무
 - 가. 사업경비 총액 조달(사업비 조달, 관리, 집행, 대지급금 포함)
 - 나.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현금청산 업무 지원
 - 다. 분양업무 수행 및 분양금등 자금수납·관리
 - 라. “갑”의 정관에 따른 자금의 관리
 - 마. 일반분양분에 대한 사업대행자 명의의 분양보증 업무
- 2) 인허가 등 사업 전반관리
 - 가. 사업시행계획 수립 또는 변경
 - 나. 관리처분계획 수립 또는 변경
 - 다. 이주 및 철거 수립 또는 변경
 - 라. 조합원 및 일반 분양 수립 또는 변경
 - 마. 착공 및 준공인가 신청
 - 바. 이전고시 및 조합해산 수립 또는 변경
 - 사. 기타 정비사업 관련법상 인허가 및 신고에 따른 수립 또는 변경
- 3) 시공자, 설계자, 감리자 등 업체 선정, 변경 및 계약관련 업무지원과 계약체결
- 4) 기타 도시정비법령, 조합정관에서 정한 업무 및 “갑”이 요청하는 사업대행자(신탁사) 업무 일체